

## [라스베가스 이사회 및 임시총회 결과보고]

2022년 5월 15일부터 3박 4일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미주총연 제29대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마쳤습니다.

준비에 수고하신 김만중 총괄본부장님과 이석찬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장대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31분의 준비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노력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이사회 및 임시총회는 단일화된 제29대 미주총연의 화합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된 미주총연이 이번 이사회에서 토론하고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곧 동영상으로 재편집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들에게 알리는 물론 기록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 <이사회>

제 1의안으로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사업계획은 곧 개설될 총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의안은 회비 및 임원분담금 책정이었습니다.

정회원 회비는 예년과 같은 200불(2년)로 동결하였고 임원 분담금은 예년에 비해 약 30%를 절감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제3의안은 회칙 개정안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조정위원회를 잠정폐쇄하고 회칙개정을 통해 존폐를 재 논의하기로 하였고 2022년 2월 19일 덴버합동총회에서 위임된 합의서 내용 추진과 행정사무실 콜로라도 주에 등록(총회장 거주지역), 회기 년도 변경(매 2년 12월 31일), 회칙위원회 운영세칙개정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미주총연의 모든 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성원의 계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회칙개정 이전에도 통용(경과조치)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 <임시총회>

직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정된 제1 의안, 제2의안이 총회에서 모두 통과되었으며 제3의안의 조정위원회 잠정폐쇄, 30대 총회장 현 이사장이 승계는 당대에 국한(합의서 이행 추진)함, 회기년도 변경(매 2년 12월 31일), 각종회의 화상회의 참석 시 성원으로 인정 하는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부칙에 삽입하여 경과조치 규정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 임시총회에서 기타 특별안건으로 회원(개인, 단체)구제방안과 정리가 집행부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속칭 "나홀로 회장 및 유명무실한 한인회" 를 구제 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재 공고 하겠음)

[참고 관련회칙]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필요시 소속 한인회 임원, 이사회 구성 요건과 예결산 증명 해야함.)미주 각 지역 한인회의 전.현직 한인 회장으로 하며, 한인회가 해산되었거나 업무와 기능이 잠정 중단된 한인회의 전.현직 한인 회장과 이사회 의결로 제명이나 자격이 중단된 자는 복권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음은 미주총연 이름으로 난무하는 카카오 톡 등에서 미주총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SNS를 정리하는 안이 집행부에 위임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위임 의결된 결정에 따라 미주총연 단톡방을 하나로 단일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할 오픈채팅방의 링크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미주총연의 위상을 재고하고 회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 관련회칙] 제 2 장 회 원 제7조(권리와 의무)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품위유지", 회칙 및 내규 준수 의무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임원위촉과 구성에 관한 공지입니다.

이번 임시총회 직전에 수락서와 분담금을 납부하고 위촉장을 받지 못하신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건상 임명장 제작을 당일에 즉시 만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분들께는 우편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 직전(5월 10일)으로 마감하려 하였던 임원조직을 6월 3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임원구성은 이미 SNS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렸습시다만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총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9대집행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재무관리를 약속합니다. 이에 따라 임원은 누구나 수락서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관련회칙] 제6장 재정 제 49 조(특별회비) 상임이사, 일반이사 및 임원이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및 임원의 자격을 유보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5월23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제29대 사무총장 박경덕**